

## 2022년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자 정책설명회 자료

2022. 4.

대구지방식약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체 대상 교육 자료를 배포합니다.

본 교육자료는 수입식품 관련 법령, 수입신고 방법, 주요 법령 위반사례,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등을 수록하고 있어 관련 영업자의 수입절차 및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문내용은 작성할 당시의 법령이나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 중 영업 변경·폐업은 ☎ 053-589-2760, 2742, 수입신고 및 절차는 ☎ 053-589-2737, 수입신고 시스템 사용 문의는 관세청 통관시스템 ☎ 1544-128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구매대행 영업자 준수사항 ..... 1
- II. 수입식품 관련 주요법령 ..... 3
- III.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UNIPASS)방법 ..... 7
- IV. 수입신고 진행상황 조회 ..... 12
- V. 인터넷 구매대행업 주요 위반사례 ..... 18
- VI. 인터넷 구매대행 관련 Q&A ..... 24
  
- 【참고 1】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 27**
- 【참고 2】위반행위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 25**
- 【참고 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 36**

## I 구매대행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등록 후 영업자 의무사항〉

- 영업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영업 변경사항을 등록 또는 신고 하여야 한다.
  - 영업 변경 등록: 영업장 소재지
  - 영업 변경 신고: 대표자, 영업소 명칭, 영업장 면적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kr](http://www.foodsafetykorea.kr)) 신청
-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개로 해당 사업을 철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대한 폐업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매년 1회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구매대행 할 때마다 매 건에 대해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 \* 수입신고 사이트 주소: <https://unipass.customs.go.kr>
  - \*\* 머그컵, 텀블러, 접시, 그릇, 수저 등 식기류 및 주방용품 등도 수입신고 해야 함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구매대행 하는 식품마다 사용 불가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수입해야 한다.
  -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검사관련정보>인터넷구매대행참고사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 금지 성분(원료)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질병예방·치료에 효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 \* (예시) 관절염에 효능효과, 혈행개선, 체지방감소에 효과 등

##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 공통사항
  - 영업등록증은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 관계 공무원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법 제17조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수입식품등의 제품명·수입자·수입일·반입장소·수량·중량·선하증권번호·제조국·수출국·수출회사명을 기록하고 이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처분 기준>

- (위생교육 미실시) (1차)30만원, (2차)60만원, (3차)90만원의 과태료
- (수입신고 미실시) (1차)시정명령, (2차)영업정지7일, (3차)영업정지15일
- (수입식품안전교육 미이수) (1차)30만원, (2차)60만원, (3차)90만원의 과태료
- (수입금지 성분 포함 제품 수입) (1차)시정명령, (2차)영업정지5일, (3차)영업정지10일
- (부당한 광고 행위) 최대 영업정지 2개월 및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 16] 과태료를 참고하시면 위반 시 처분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II 수입식품 관련 주요 법령

###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신고)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서를 하여야 함
  - ※ 수입 미신고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서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수입식품등(이하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위생교육)**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자는 **매년 1회**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위생교육 미 수료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17조(위생 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교육명령)**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 미 수료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26조(교육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2.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4. 그 밖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포상금 지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시행 '22.2.18)

※ 위반행위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참고 2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 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고방법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국민신문고 등

##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2개월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관련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 ②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고시 제2019-96호)를 검색하여 확인 가능

### 3. 「식품위생법」

- (식품원료 확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나 수입 금지 성분, 의약품 성분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을 구매대행 하여서는 아니 됨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 성분에 관한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1] 인터넷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참조(p.27)

### III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수입신고(UNIPASS) 방법

#### ▶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 유니패스에서 인증서 등록을 통한 로그인 후, 통관단일창구 > 요건 신청 > 신청서작성 > 8.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 1. 공통사항

- 신고서 기본사항(제품구분, 신고구분, 신고기관, 신고인, 수하인 등) 입력

공통사항	품목사항	엑셀업로드	
*신청번호	99999 - 20 - 재번	*신청일자	2020-06-04
*전송구분	원본	*신고제품구분	가공식품
*신고구분	본신고	*신고기관코드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b>전송구분</b> 원 본 : 해당 신청서가 최초 전송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전송 : 해당 신청서 최초전송 이후부터 요건기관의 접수통보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경우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취 소 : 요건기관의 접수통보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경우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b>「처리기간」</b> 가공식품 등 : 서류검사 2일, 정밀검사 10일(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축산물 :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 인터넷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엑셀업로드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번호, 신청일자, 전송구분은 자동 입력
- 신고제품구분(필수기재)
  -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신고구분(신고시기) 입력(필수기재)
  - 본신고 : 입항 후 신고하는 경우
  - 사전신고 : 입항 5일 이전 신고하는 경우(구매대행업의 경우 사전신고)
- 신고기관 입력(필수기재)
  - ※ 신고기관에 따라 관할 보관창고가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

신고일반

*선(기)명	사전신고	B/L	
*보관창고	00000000   사전신고 보관창고	창고전화번호	
*입항일자	9999-12-31	*반입일자	9999-12-31

신고구분이 '사전신고'인 경우 신고일반 정보 중 '선(기)명', '보관창고', '입항일자', '반입일자' 항목의 값은 고정 값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수하인(수입화주)

*성명		*연락처	
-----	--	------	--

신고인

*영업등록번호		*상호	
*성명		*연락처	
*주소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주소입력 불가시 '해당없음'으로 기재

- 선(기)명, 보관창고(검사반입장소), 입항일자, 반입일자 필수기재, 그 외 선택기재
- ※ 사전신고의 경우 선(기)명, 보관창고, 입항일자, 반입일자는 자동 입력됨
- 수하인(수입화주)의 성명, 연락처 입력(필수기재)
- 신고인(구매대행자)의 영업등록번호, 상호, 성명, 연락처, 주소,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입력(필수기재)
- 신고 가능 영업의 종류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통합민원창구,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

식품 국내업체 조회 - Internet Explorer

https://umpass.customs.go.kr/csp/csw/infom/cdmt/openCSW0302015Q.do?reqApfmCd=GOvCBRDH0&reqForm=CSW01010055\_dclAgntnmjCSW01010055\_dclAgntEnt...

식품 국내업체 조회

업종  | 상호

허가(등록·신고)번호  | 무수입등록번호

조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안내사항

-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신고인(수입화주) 정보 입력(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필수기재)  
 ※ 수입화주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등록(통합민원창구,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  
 ※ 동일 상호명으로 여러 건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이 조회되면 이는 '16.6.4일 이전 식품등간기 국산수입판매업' 특수로 소지하고 계신 경우이며, 상세 조처사항은 위 통합민원창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994 건 | 페이지당 10 | 선택

No	인가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업종	무수입등록번호
1	2017001 201728	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최
2	2017001001 201728	케이앤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김
3	2016001001 201628	(주)대일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권
4	2017001000 201727	스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전
5	2017001001 201727	프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한

닫기

신고일반

*선(기)명	사전신고	B/L	
*보관창고	00000000   사전신고 보관창고	창고전화번호	
*입항일자	9999-12-31	*반입일자	9999-12-31

신고구분이 '사전신고'인 경우 신고일반 정보 중 '선(기)명', '보관창고', '입항일자', '반입일자' 항목의 값은 고정 값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수하인(수입화주)

*성명	홍	*연락처	010-0000-0000
-----	---	------	---------------

신고인

*영업등록번호	2016200157	*상호	무연
*성명	이	*연락처	010-0000-0000
*주소	48723 부산광역시 동구 남 상가동 101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a href="http://m31.go.kr">http://m31.go.kr</a>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주소입력 불가시 '해당없음'으로 기재

- 공통사항 정보가 모두 입력된 화면

## 2. 품목사항

### ○ 품목사항 입력

공통사항
품목사항
엑셀업로드

\*신청번호 99999 - 20 - 재번

\*전송구분 원본

\*신고구분 본신고

\*신청일자 2020-06-08

\*신고제품구분 가공식품

\*신고기관코드 서울청 수입관리과

전송구분

원본 : 해당 신청서가 최초 전송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전송 : 해당 신청서 최초전송 이후부터 요건기관의 접수통보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경우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취소 : 요건기관의 접수통보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경우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가공식품 통 : 서류검사 2일, 정밀검사 10일(현군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축산물 :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 인터넷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엑셀업로드법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품목정보**

\*제품명  제품 URL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EA

품목정보는 최대 99개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 첨부파일은 최대 3MB인 파일만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은 확장자가 [pdf, pptx, ppt, hwp, xls, xlsx, doc, docx, png, jpg, jpeg, bmp, gif, tif, zip] 인 파일만 가능합니다.

전체 : 0건

항번호	제품명	제품 URL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선택
1	ITEM		corporation	미국	1	<input checked="" type="radio"/>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품목의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필수기재, 그 외 선택기재
  - 첨부파일은 제품당 한 개만 등록할 수 있으며, 3MB까지 등록 가능하므로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압축 또는 문서파일에 저장하여 제출할 것
  - ※ 확장자가 pdf, pptx, ppt, hwp, xls, xlsx, doc, docx, png, jpg, bmp, gif, tif, zip인 파일만 첨부 가능
- 수하인(수입화주)이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 제품 종류별로 등록
  - ※ 여러 제품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UNIPASS에서 '엑셀업로드' 기능 제공

**품목정보**

\*제품명 ITEM 제품 URL

\*제조회사명 corporation \*제조국가 US Q 미국

\*총수량 1 EA

품목정보는 최대 99개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 첨부파일은 최대 3MB인 파일만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은 확장자가 [pdf, pptx, ppt, hwp, xls, xlsx, doc, docx, png, jpg, jpeg, bmp, gif, tif, zip] 인 파일만 가능합니다.

전체 : 1건

항번호	제품명	제품 URL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선택
1	ITEM		corporation	미국	1	<input checked="" type="radio"/>

- 품목이 입력된 화면

- 10 -

- 11 -

## IV 수입신고 진행상황 조회

### ○ 초기화면

수입식품정보마루  
Imported Food Information Maru

전자민원 | 알림자료 | 안전정보 | 통계정보 | 고객지원

WISE CONSUMPTION & SAFE FOOD  
안전정보, 현명한 소비와 안전한 먹거리의 시작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수입식품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이 되겠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등록신청 바로가기

TOTAL SEARCH 통합검색

검색어 입력

인기검색어

- 1 검색시스템 NEW
- 2 검색광고 +2
- 3 시멘틱 +1

최근검색어

- 수입검사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정보마루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야 함
- ※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이후 서비스 이용
- 수입식품 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 접속 후 초기화면에서 '마이페이지' 클릭

### ○ 진행상황 조회

수입식품정보마루  
Imported Food Information Maru

전자민원 | 알림자료 | 안전정보 | 통계정보 | 고객지원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 나의 민원 현황

나의 민원 현황

민원 및 수입 신청/완료 건수

3 민원 신청 건 (최근1년)

5 민원 임시저장 건 (최근1년)

22 민원 완료 건 (최근1년)

**861 수입 접수 건 (최근1년)**

860 수입 완료 건 (최근1년)

- '수입 접수 건(최근1년)' 버튼 클릭

※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 '수입신고 진행상황' 메뉴로 직접 이동할 수 있음

수입신고 진행상황

\*2018년도 이전 수입신고 정보는 신고제물구분, 접수번호, 문제명 신청번호, 사업자등록번호(수입자) 입력 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체 | 진행상태 전체 | 검색

수입업체명 | 제품명

접수번호 | 접수기간 2019-06-10 ~ 2020-06-09 | 초기화

관세청 신청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수입자)

총 861 건

검사진행상황 | 행정신청 | 신청완료 | 통관 | 검역대상자료 | TO

선택	NO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입업체명	신고제물구분	제품명	총수량	총중량	검사종류	검사수수료	납부여부	진행상태	최종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201900	2019-06-24		가공식품	LINGUINE PICCOLE	2,400 BAG	1,200 Kg	세무	-	-	검사완료	적합
<input type="checkbox"/>	2	201900	2019-06-24		가공식품	TRICOLORE	600 CT	300 Kg	무적취급본	-	-	검사완료	적합
<input type="checkbox"/>	3	201900	2019-06-24		가공식품	FILETTI DI ALECI IN PEZZI	720 BK	518 Kg	세무	-	-	검사완료	적합
<input type="checkbox"/>	4	201900	2019-06-24		가공식품	INTEGRALE SPAGHETTI	600 CT	300 Kg	세무	-	-	검사완료	적합

- 목록에서 검사진행상황을 조회하고자 하는 수입신고 건을 선택 후 '검사진행상황' 버튼 클릭



- 단계별로 검사진행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

### ○ 수입신고서, 확인증 등 출력



- 목록에서 신고서 등을 출력하고자 하는 수입신고 건을 선택 후 '출력' 버튼 클릭
- ※ '시험성적서', '수입신고확인증', '부적합통보서'는 진행상태가 '검사완료'인 경우만 출력할 수 있으며, '전자위생증명서'는 '호주'·'산' '양고기'인 경우만 출력 가능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출력물 >

각종출력 : 수입식품정보마루 - Chrome

수입신고 각종 출력

수입신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신고시기	신고일	접수번호	201900275860	접수일자	2019년 07월 04일
신고제출구분	1. 통관신고 [ ] 2. 수입신고 [ ] 3. 수출신고 [ ] 4. 가공신고 [ ] 5. 수출신고 [ ] 6. 가꾸 또는 용기 포장 [ ] 7. 조달(보관) [ ]	처리기간	식품통관기간: 통관일(2일), 통관일(3일), 포장처리(통관일(5일), 정밀검사(10일), 잔류수시(통관일(10일), 수출조사(처리(5일), 가꾸(보관(통관일(10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	상호 입종 주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허가(등록)신고번호		
제조 가공업자	상호 입종 주소	수입자등록번호	성명		
수입신고 대행업자	상호 입종 주소	수입자등록번호	성명		

발급문서 뷰어 프로그램   닫기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출력물 >

각종출력 : 수입식품정보마루 - Chrome

수입신고 각종 출력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검 수 번 호	201900275860	검수일	2019년 07월 04일
발 급 번 호		발급일	2019년 07월 08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제 조 가 공 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수 입 신 고 대 행 업 자	성 명 주 소		

발급문서 뷰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닫기

< 시험성적서(정보공개용) 출력물 >

각종출력 : 수입식품정보마루 - Chrome

수입신고 각종 출력

시험성적서

출력일자: 2020년 06월 09일

### 수입식품등 검사결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접수번호	20190	접수일자	2019년 07월 04일
제 품 명	YBARRA SALSA ALIOLI	제품한글명	
검사종류	검밀	제품유형	소스
외국기관	광인정 광주검사소		
외국번호	20190		

발급문서 뷰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닫기

## 1. 수입신고 미신고 행위

- 수입신고대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는 수입신고 대상임

### [식품 등 미신고]

- ❖ 영양제, 유산균제품, 조제유류 등 수입산 식품 등을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구매대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 [식기류 등 주방용품 미신고]

- ❖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POTATO PEELER, 채칼, 식칼, 가위 등 주방용품을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구매대행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 ❖ 그릇, 접시, 컵, 텀블러, 등 식기류 및 포크, 수저 등 커트러리 제품을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매대행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 [식품용 기구 등 미신고]

- ❖ 네\*\*\*소, 일\*, 드\*\* 등 커피머신을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구매대행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 ❖ 가정용 생맥주기계를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구매대행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 ❖ 후라이팬, 냄비, 주전자, 그릴 등을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구매대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 2. 식품등에 사용불가 성분(원료) 함유제품 구매대행

- 수입 금지성분\*, 의약품 성분,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 [참고1] 인터넷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참조

### [수입 금지성분 등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 구매대행]

- ❖ 센나 잎(Senna Leaf), 카스카라사그라다 껍질(Cascara Sagrada Bark)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을 구매대행
- ❖ Vitamin K2(Menaquinone, MK-4, MK-7), Methylcobalamin, Methyl-B12(메틸 코발아민이 함유된 식품을 구매대행
- ❖ Magnesium glycinate, Magnesium diglycinate, Magnesium bisglycinate가 함유된 식품을 구매대행
- ❖ L-ornithine (L-오르니틴), α-Lipoic acid(알파리포산)이 함유된 식품을 구매대행
- ❖ Echinacea(에키네시아)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구매대행

### [의약품 성분 함유]

- ❖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구매대행

-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 시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http://impfood.mfds.go.kr))> 안전정보>해외직구정보>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및 해외직구안전정보** 참고

### 3.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행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참조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 예방 및 치료 효과,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식품을 판매하며 해당 식품에 대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 ❖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며 '뇌졸중 예방', '암 예방', 등의 내용의 광고
- ❖ 식품의 섭취 시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치료, 아토피 발진 및 피부염 증상 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 광고
- ❖ 치매예방, 인슐린 조절 기능에 도움, 암 발생을 막아준다는 등 질병의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 사용, 의약품에 포함 또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약국 판매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 광고
- ❖ 항바이러스제품, 항암제, 여성호르몬제, 천연 항생제 등 의약품으로 표현하는 광고
- ❖ 탈모 모발 성장, 모발성장 촉진제, 모발성장제 등의 의약품 표방 광고
- ❖ 공진(신)단, 경육고, 사군자탕,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명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 ❖ 피부건강, 장건강, 면역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면역력 강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 혈액순환 개선효과 표방 광고
- ❖ 지방분해, 체중감량, 식욕억제, 피하지방 감소, 체지방 감소에 도움 등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내용의 광고
- ❖ 키 성장, 연골 및 관절건강에 도움,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월경 전 증후군 개선 도움 등의 광고
- ❖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

- ❖ 실제 제조가공한 업소는 A이나 표시광고에는 B로 광고하는 경우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 등]**

- ❖ '○○지수 1위', ○○기관 인증 등 공인기관의 수상, 선정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 ❖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GM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 식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에 대한 광고
-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문구 수정 등 심의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 주스를 판매하면서 식품에 사용한 원재료인 ○○의 효능 효과(염증질환 개선, 관절염 예방에 도움 등 특정 신체부위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

**[감사장,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 ❖ 개인이 올린 체험 후기(섭취 후 ○kg 감량, 뱃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장운동이 좋아진 것 같아요 등)를 캡처하여 제품의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 ❖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인용(체질개선에 도움이 되었어요, 체중감량에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등) 한 광고
- ❖ 피부개선, 아토피 개선 등의 고객의 사용 전·후 사진 등 체험기 형태 광고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 ❖ 조제유류를 구매대행하면서 모유와 유사한 표현 및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표현하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는 표시·광고]**

- ❖ 다른 ○○과 달리 □□은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 달리 □□은 △△만을 사용 합니다
- ❖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 등이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우려가 있는 광고
-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국내 '최초'로 개발, 국내 최초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비교대상,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광고,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사 ○○과 차이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색과 농도만 봐도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문구 및 타사 제품의 이미지를 비교·표시하는 광고
- ❖ A사 제품을 광고하며 제품에 성분 함량에 대하여 타사의 모든 제품의 조사 결과가 아닌 A사보다 성분이 낮은 B, C 사 제품만을 비교하여 A사 제품이 더 좋은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경우
- ❖ 제조방법이 다른 두 제품을 비교하며 다른 제조방법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 ❖ 최고, 최상, 최적 등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표시·광고

## VI 인터넷 구매대행 관련 Q&A

### Q.1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과 일반 수입식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인터넷 구매대행식품은 국내 소비자(개인)의 요청에 의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입니다.

\*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현품 표시사항 검사 대상 아님

### Q.2 인터넷 구매대행과 해외직구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인터넷 구매대행 : 국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제품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입니다.

해외직구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 Q.3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신고는 필수인가요?

☞ 필수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7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 Q.4 인터넷 구매대행 신고서의, 송하인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송하인이란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해외 업체로, 구매대행 제품을 국내로 보내는 업체를 말합니다.

### Q.5 신고수량이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수량은 제한이 없으나, 세관에서의 자가소비 범위는 미화 150\$ 이하, 건강기능식품 6병 이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1544-1285

### Q.6 캡슐제품을 가공식품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 구매대행 업무 편의상 건강기능식품 탭이 만들어졌으나, 국내로 들어오는 구매대행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캡슐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민원인에게는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 Q.7 적합한 구매대행 식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식품안전나라의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해외직구 금지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8** 세관과 식약처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세관은 식품을 포함한 모든 직구 제품을 검사하는 곳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인터넷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신고 제품만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어서 현재 기준과 결과가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 구매대행 검사는 식약처 소관이며, 통관검사는 세관 소관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인터넷구매대행 검사와 세관의 통관검사를 모두 거쳐야 구매자가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일정량의 물품을 선구매 해놓고 보세구역에 보관해 두었다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상품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구매 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구매 요청을 받은 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를 대행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에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소비자의 구매요청 없이 선구매하여 보세구역 내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행위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해당됩니다.

**참고 1** 인터넷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21.8.25 기준)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검사관련정보>인터넷 구매대행참고사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 성분 (원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음

<유의사항>

1. 다음의 금지성분 리스트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가 지금까지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 관련 확인된 금지성분을 우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 \* 1번은 인터넷 구매대행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부적합된 성분들이며, 2번은 그외 확인된 금지성분 목록임
2. 해당 금지성분 이외에도 의약품성분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내외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직구에서 금지하는 성분(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 또한 인터넷 구매대행 금지성분에 해당합니다.
  - \* 젤라틴, 콜라젠 등 반추동물(소)을 원료(예 : bovine gelatine 등)로 사용한 식품 등은(BSE 관련)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당 여부 확인 후 신고
4. 영업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는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하며, 수입신고하는 제품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를 포함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영업자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 관련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책무)

1. 부적합 이력 수입금지 성분

연번	성분 또는 원료명	기타
1	5-HTP (5-hydroxytryptophan), Griffonia, Griffonia simplicifolia seed extract	
2	Acetyl-L-carnitine, N-Acetyl-L-Carnitine	
3	Agmatine Sulfate(Agmapure)	
4	Alpha-Lipoic Acid (ALA)(리포산), α-Lipoic acid, R-Lipoic acid, Lipoic acid(ALA)	
5	Aphanizomenon flos-aquae(AFA), Microcystin(마이크로시스틴,미소시스틴)	
6	Arachidonic acid	
7	Bacopa (Brahmi)	
8	Berberine (베르베린)	
9	Black Cohosh(블랙 코호시), black snake root, Actaea racemosa(승마), Cimicifuga racemosa	
10	Buckthorn (Rhamnus frangula)(bark만 불가)(백턴)	
11	Butea superba, Creeping butea, Butea gum tree, Redkwaokrua	
12	Butterfly Pea	
13	Cat's Claw, Uncaria Tomentosa	
14	Catuaba	
15	Charcoal(차콜, 숯), Activated charcoal	
16	Chromium Picolinate (피콜린산 크롬)	
17	Citicoline, cognizen	
18	Clubmoss Extract (석송(石松)Clubmoss,ChineseClubmoss)	
19	Colt's foot, Coltsfoot, Farfarae flos, Ass's foot, Bull's foot, Coughwort, Farfara, Foal's wort, Fieldhove, Horse hoof, Horse-foot, Horse-shoe, Horsehoof, Tussilago farfara Linné, 관동(款冬),	
20	Devil's Claw Root, Harpagophytum procumbens	
21	DHEA(Dehydroepiandrosterone)	
22	Diindolylmethane (DIM)	
23	Diosmin	
24	Echinacea spp.(에키네시아 속)	
25	Epimedium sagittatum, Epimedium Grandiflorum (Horny goat weed)(이카린)	
26	Forsythia suspensa extract(Fruit) (연교)	
27	Fur Seal, 물개(オットセイエキス),	
28	Gamma-aminobutyric acid (GABA)	

연번	성분 또는 원료명	기타
29	Garcinia Quaesita	
30	Germanium (게르마늄)	
31	Goldenseal Root(OX-EYE DAISY)(골든셀 뿌리)	
32	Guggul Extract(resin), guggulsterones, 몰약	
33	Gymnema Sylvestre (당살초)	
34	Hemp (Cannabis sativa L. 포함)	
35	Histamine, Histamine Hydrochloride, Histamine HCl	
36	Horse Chestnut (서양칠엽수,홀스캐슈너츠)	
37	Icariin (이카린)	
38	Indian Snake Root, Rauwolfia serpentina (인도사목)	
39	kaempferia parviflora, 흑생강	
40	Kava kava, kawa kawa (뿌리, 잎, 줄기), Kavain	
41	L-citrulline (Citrulline Malate)	
42	Lobelia, Rhodea japonica Roth, 만년청 (萬年青)	
43	Longjack, Eurycoma Longifolia (Tongkat Ali)	
44	L-ornithine (L-오르니틴)	
45	L-Selenomethionine	
46	Magnesium citrate	
47	Magnolia(magnolia officinalis) Extract(후박)	
48	Mamushi, 살모사(まむし),	
49	Melatonin (멜라토닌)	
50	Methylcobalamin, Methyl-B12(메틸코발라민), Active-B12	
51	L-dopa, Montanoa, Montanoa Tomentosa	
52	Muirea Puama (Ptychopetalum olacoides)	
53	N-acetyl-cysteine (NAC), N-acetyl-L-cysteine (NAC)	
54	Orlistat(오르리스타트)	
55	Para-aminobenzoic acid (PABA,파바)	
56	Phellodendri Cortex, Phellodendron, Phellodendron bark,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 Phellodendron chinense Schneider	
57	Phenylethylamine(PEA), β-Phenylethylamine (β-PEA), 2-Phenethylamine, β-phenethylamine-Hydrochloride (β-PEA-HCl)	
58	Pinellia Tuber, Pinellia ternata Breitenbach, 반하(半夏),	
59	Pomegranate Seed (석류씨), Pomegranate bark	

연번	성분 또는 원료명	기타
60	Poppy (Papaver somniferum 포함)	
61	Pueraria mirifica	
62	Pygeum Africanum (bark)	
63	Raspberry Ketone (라즈베리케톤)	
64	Rhubarb, Rheum palmatum, Rheum tanguticum, Rheum officinale Bailon(대황)	
65	Salacia(사라시아)	
66	Scorpion, scorpio, Buthus martensii Karsch, 전갈(全蝎),	
67	Senna(센나)	
68	Silver(실버, 은)	
69	Slippery Elm(느릅나무, 유근피), Ulmus rubra	
70	Synephrine	
71	Vervain, Verbena, Verbanalin (버바인,마편초,지상부,꽃)	
72	Vinpocetine(빈포세틴), Vinca minor, lesser periwinkle	
73	Vitamin K2, Menaquinone, MK-4, MK-7	
74	White willow, Salix Alba (흰버드나무)	
75	Wild Yam	
76	Yohimbe(요힘베, 껍질)*85	
77	Yohimbin (요힘빈)	
78	Zinc citrate	
79	곤약/글루코만난 겔화제	
80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 (E131 Patent blue V 등)	
81	Mucuna Pruriens seed	
82	Magnesium glycinate, Magnesium diglycinate, Magnesium bisglycinate	
83	Cassia occidentalis	
84	Terminalia arjuna	
85	Andrographis	
86	Phyllanthus amarus	
87	Shilajit	
88	Buchu leaf, Agathosma betulina, Agathosma creunlata	
89	Tejocote root(Crataegus mexicana)	
90	Lithium	신규(식품등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

## 2. 기타 수입금지 성분

연번	성분 또는 원료명	기타
1	1,3-dimethylamylamine(DMAA), 1,3-dimethylbutylamine(DMBA) (1,3-디메틸부틸아민)	
2	Acetaminotadalafil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	
3	Acetyl acid (아세틸산)	
4	Acetylvardenafil (아세틸바데나필)	
5	Adrenaline, Epinephrine	
6	Ajuga Decumbens(조개나물, 백하초, 근골초)	
7	Aminotadalafil (아미노타다라필)	
8	Anemarrhennae asphodelides(지모)	
9	Avanafil (아바나필)	
10	Belladonna(벨라돈나), Atropa belladonna	
11	Benzylsildenafil (벤질실데나필)	
12	Bergenin	
13	Caesalpinia Benthamiana	
14	Carbodenafil (카보데나필)	
15	Cascara sagrada (카스카라사그라다)	
16	Cascaroside(카스카로사이드)	
17	Cha De bugre(herb powder)	
18	Chlorodenafil (클로로데나필)	
19	Chloropretadalafil (클로로프레타다라필)	
20	Chlorosibutramine (클로로시부트라민)	
21	Chlorosipentramine(클로로시펜트라민)	
22	Chromium Arginate	
23	Cinnamylidenafil (신나밀데나필)	
24	Cis-cyclopentyltadalafil (cis-사이클로펜틸타다라필)	
25	Cordia Salicifolia	
26	Couch Grass, Agropyron repens, Elymus repens (개밀)	
27	Cyanotis Vaga	
28	Cyclopentynafil (싸이클로펜티나필)	
29	D-chlorpheniramine (클로로페니라민)	
30	Demethylhongdenafil (데메틸홍데나필)	
31	Demethyltadalafil (데메틸타다라필)	

연번	성분 또는 원료명	기타
32	Descarbonsildenafil(데스카본실데나필)	
33	desmethylcarbodenafil (데스메틸카보데나필)	
34	Desmethylsibutramine (데스메틸시부트라민)	
35	Desulfovardenafil (데설포바데나필)	
36	Dexamethasone (덱사메타손)	
37	Dichlorodenafil(디클로로데나필)	
38	Didesmethylsibutramine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39	Dimethylsildenafil (디메칠실데나필)	
40	Dimethylthiosildenafil (디메틸치오실데나필)	
41	Dithiopropylcarbodenafil(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	
42	Dolomite (돌로마이트, 백운석)	
43	DNP (dinitrophenyl, Dinitrophenol)(디니트로페놀), 2,4-Dinitrophenol (2,4-DNP)	
44	Ebony(흑단, 검은나무)	
45	Ephedrine (에페드린)	
46	Fenfluramine (펜플루라민)	
47	Fluoxetine (플루옥세틴)	
48	Fucoxanthin	
49	Furosemide (푸로세미드)	
50	Gelsemium Sempervirens(겔세민, 캐롤라이나 자스민)	
51	Gendenafil (겐데나필)	
52	Glibenclamide (글리벤클라미드)	
53	Gliclazide (글리클라지)	
54	Glimepiride(글리메피리드)	
55	Glipizide (글리피지)	
56	Gravel Root	
57	Homosildenafil (호모실데나필)	
58	homotadalafil(호모타다라필)	
59	Hongdenafil (홍데나필)	
60	Hoodia Cactus powder	
61	Hoodia Gordonii	
62	Hydroxychlorodenafil(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	
63	Hydroxyhomosildenafil(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64	Hydroxyhongdenafil (하이드록시홍데나필)	

연번	성분 또는 원료명	기타
65	Hydroxythiohomosildenafil (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66	Hydroxyvardenafil (하이드록시바데나필)	
67	Imidazosagtriazinone (이미다조사가트리아지논)	
68	Isopropylnortadalafil(이소프로필노르타다라필)	
69	Levothyroxine (레보치록신)	
70	Ligustrum Berry	
71	Liothyronine (리오치로닌)	
72	Lumbrokinase(룸브로키나제), 지렁이	
73	Methylhydroxyhomosildenafil (메틸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74	Mirodenafil (미로데나필)	
75	Nitrodenafil (니트로데나필)	
76	N-nitrosufenfluramine (N-니트로소펜플루라민)	
77	N-octylnortadalafil (옥틸노르타다라필)	
78	Norneosildenafil (노르네오실데나필)	
79	Norneovardenafil (노르네오바데나필)	
80	Oxilofrine	
81	Oxohongdenafil (옥소홍데나필)	
82	Phenolphthalein (페놀프탈레인)	
83	Piperidinohongdenafil (피페리디노홍데나필)	
84	Prickly Chaff(Achyranthes aspera) (flower) Extract	
85	Propoxyphenyl-thioildenafil(프로폭시페닐치오아일데나필)	
86	Propoxyphenylthiohomosildenafil (프로폭시페닐치오호모실데나필)	
87	Propoxyphenylthiohydroxyhomosildenafil (프로폭시페닐치오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88	Propoxyphenylthiosildenafil (프로폭시페닐치오실데나필)	
89	Pseudovardenafil (슈도바데나필)	
90	Radix morindae officinalis(꼭두서니과)	
91	Red root bark, quinna tree bark, cichona bark PavonetKlotzsch(키나나무, 꺾질)	
92	Rhaponticum Carthamoides	
93	Seman Pruni, 도인(桃仁),	
94	Sennoside(센노사이드)	
95	Sibutramine (시부트라민)	
96	Sildenafil (실데나필),	

연번	성분 또는 원료명	기타
97	Tadalafil (타다라필)	
98	Thiohomosildenafil (치오호모실데나필)	
99	Thioquinapiperifil (치오퀴나피페리필)	
100	Thiosildenafil (치오실데나필)	
101	Trans-cyclopentyltadalafil (trans-사이클로펜틸타다라필)	
102	Trichopus Zeylanicus	
103	Udenafil (유데나필)	
104	Vardenafil (바데나필)	
105	Veratrum, White Hellebore, Veratri Rhizoma et Radix	
106	Xanthoanthrafil (잔소안트라필)	
107	β-methylphenethylamine-Hydrochloride(β-MPEA·HCl), β-methylphenethylamine (β-MPEA)	
108	Orthosiphon stamineus	

## 참고 2 위반행위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위반사항	포상금액	근거 법조문 (수입식품법)
1.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0만원	제15조제1항
2. 수입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나.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수입식품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 제2조제5호의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 라.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10만원 20만원 5만원 20만원	제18조
3.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다.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라.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를 한 후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15만원 20만원 30만원 10만원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
4.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30만원 10만원	제29조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 |   |   |
|---|---|
| <p><b>보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보장, 신분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li> </ul> <p><b>보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li> <li>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li> <li>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li> </ul> | <p><b>상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번없이 1398 또는 110</li> </ul> <p><b>신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 터 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li> </ul> </li> <li>방문·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li> <li>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li> </ul> </li> </ul> <p>※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밀명 대리신고 가능</p> |
|---|---|

분야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 |  |   |   |
|--|---|---|
| <p><b>건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량식품 제조·판매</li> <li>구조·구급활동 방해</li> <li>무면허 의료행위 등</li> </ul>        | <p><b>안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차 진입방해, 전용구역 주차</li> <li>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li> <li>부실시공 등</li> </ul> | <p><b>환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기준초과 소음·진동 발생</li> <li>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li> <li>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li> </ul> |
| <p><b>소비자이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이스피싱, 보형사기</li> <li>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li> <li>수산물이력 허위표시 등</li> </ul> | <p><b>공정경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간 담합</li> <li>저작권 침해</li> <li>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li> </ul>         | <p><b>기타 공공의 이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짓 채용광고, 채용감요</li> <li>본사의 대리점 갑질</li> <li>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li> </ul>   |

